

##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개정이유

-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“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”의 요건을 삭제함. (안 제5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후 장학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, 이로 인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